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2018 ~ 2022

국 토 교 통 부

목 차

Ⅰ. 수립배경 ····· 1

Ⅱ. 제4차 기본계획 평가 ····· 2

Ⅲ. 건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5

1. 건설산업의 현황 ····· 5
2. 국내외 건설경기 동향 ····· 7
3. 건설산업의 문제점 분석 ····· 10

Ⅳ.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방향 ···· 13

1. 비전과 목표 ····· 13
2. 제5차 기본계획 체계 ····· 14

Ⅴ. 세부 추진방안 ····· 15

1. 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 ····· 15
2. 공정한 동반성장 기반 마련 ····· 23
3.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 30

Ⅵ. 추진일정 ····· 36

Ⅰ. 수립 배경

□ 건설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기본 성격** : 중장기 건설산업정책 기조 및 제도개선 방안의 제시
◇ **기본계획의 주요 범위**
① 건설산업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② 건설기술의 개발·건설기술인력 육성 대책
③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진출 지원
④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환경보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⑤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 대책
⑥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 대책
⑦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 표준화 대책 등
⑧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이 2017년 만료됨에 따라 기존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신규 계획 수립 필요

○ 제4차 산업혁명, 건설경기 등락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하고, 국정과제 및 경제정책방향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17.5~)

□ 그간 여러 기관의 **연구 성과**, 학계·업계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 활동** 결과 등을 토대로 **비전·목표·주요 과제** 도출

○ 현 정부의 건설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건설산업 혁신 대책***들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효적 계획 수립

* 일자리 개선대책('17.12), 건설산업 혁신방안('18.6),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18.11)

⇒ **건설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해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간 단계적 실천**

Ⅱ. 제4차 기본계획 평가

1 제4차 계획의 주요 내용

□ **제4차 계획의 비전**은 "**건설산업의 지속발전 기반강화**"

○ 건설산업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여 **내실**을 다지고 **외연**을 확대하며,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동반성장**을 추진

□ **비전 성취를 위해** 내실화, 외연확대, 동반성장 등 **3대 목표 제시**

○ (**건설산업의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우수업체 선별** 강화, **기반분야** 육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 **해외건설 5대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수요 발굴 및 부가가치 제고** 추진

○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 **조화로운 발전**과 **불합리한 관행·문화의 개선**을 통해 건설분야 **동반성장 구조**를 확립

□ 제4차 계획 실천을 위해 목표달성을 위한 **7대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각 세부과제의 실현을 위해 **20개 추진방안** 마련

○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를 위한 중점과제로 **진출입 체계 강화, 업체 선정지원 시스템 개선, 산업기반 공고**

○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해외건설 5대 강국 도약, 신시장 발굴 등 수요기반 확충**

○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동반성장의 가치 실현을 위한 **불공정 관행 근절,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2 제4차 계획의 평가

□ 제4차 계획의 비전인 '내실화·외연확대·동반성장'에 따라 각종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건설산업의 지속발전 기반을 조성**

○ **종합평가낙찰방식 도입** 등 발주제도 개선, 설계·감리·CM **통합, 공생발전과 불합리한 관행·문화의 개선**으로 동반성장 기틀 확립

□ 그러나 **유가하락 및 국내외 건설환경 변화**로 인하여 당초 취지가 다소 약화되거나 지연된 과제도 있음

○ 해외건설은 금리 인상, 유가하락 등 **대외 불확실성**과, 경쟁력이 낮은 **PPP 위주의 사업증가**로 수주액 급감('17년 290억달러)

○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 대립**에 의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과제 등 당초 목표한 성과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한계**도 존재

□ **4**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야별로 평가**하면,

○ (**진출입체계 강화**) 업체의 시공능력 확보를 위해 **등록기준**에 기술인 **시공경력을 반영**하고, 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점검 규정** 신설

- 부실업체 차단을 위한 **직접시공 대상범위 확대**와 **종합업종 등록요건 강화**,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 마련** 등 진입기준 상향은 **미흡**

○ (**업체선정지원시스템 개선**)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발주제도를 개선**하고, **보증의 필터링기능**과 건설업체 **정보체계 강화**

* ('14~15년) 종심제 시범사업 실시 → ('16년) 종심제 시행, 종전 최저가낙찰제 폐지

- 적격심사, 종심제는 여전히 **변별력이 미흡**하여 **운찰제라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키스콘**과 **타 정보망 추가 연계**도 필요

○ (**산업기반 공고화**) **스마트 건설**을 위한 설계·감리·CM 통합, 건설 기준체계 구축 및 코드화를 진행하고, **기능인등급제 추진 지연**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관련 정부입법 추진 중으로, 기능인등급제의 제도 정착을 위한 **법제화** 및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해외건설강국 도약**) GIF 투자로 **투자개발형, 고부가가치 사업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다변화** 추진 및 **중소업체 해외진출** 활성화

- 유가하락에 따른 발주물량 감소와 엔화·유로화 약세에 따른 경쟁심화로 **해외수주액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되어 추가대책 필요

○ (**신시장 발굴**) 노후시설물 관리에 관한 법안*을 마련, 스마트시티 고도화 등 **신시장 창출**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R&D 지원**

* 시특법 개정 완료('17.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에 관한 기본법 발의('17.11)

- 부가가치 확보 방안이 R&D투자 확대 위주로, **핵심기술 위주 전략 제시가 부족**하고, **민간의 기술개발·활용 촉진방안**이 거의 없었음

○ (**불공정관행 근절**) 민간공사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제도** 신설, **불공정 도급계약조건 무효화** 등 불공정행위 방지책 추진

* 민간건설공사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제도 신설(**건산법 개정, '13.8**)

- 기능인력 양성체계와 연계하여 관리하고자 한 **기초안전교육 이수여부 관리 및 재원마련** 등 추진과제는 **지연**됨

◇ 4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16.1월) 등 일부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등록제도 개편, 직접시공 확대, 기능인 등급제 도입** 등 주요 과제의 입법화에는 한계

⇨ 보다 근본적인 산업구조 개편을 시도하되, **건설업계**와 **국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고 제도화할 필요

Ⅲ. 건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건설산업의 현황

◈ 건설산업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대표적 '국가 기간산업'

○ 건설산업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GDP성장기여도 39%('17)), 취업유발효과가 큰 **親고용산업***이자 생산유발효과가 큰 **기간산업**

* 건설업 취업자 수('17년 평균) : **198만명** (전체 취업자 중 7.4%)

【 `17년 GDP 구성(조원, 한국은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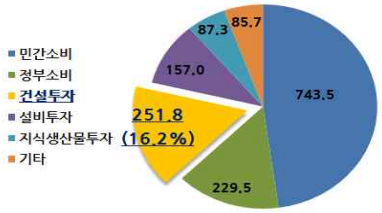

【 생산유발계수 ('14년, 한국은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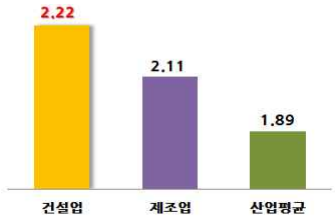

○ 해외건설은 **수출산업***으로 **경상수지 개선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경제위기 때마다 **우수한 실적으로 경기회복에 기여****

* 수출실적('07~'16, 억$): (건설) 5,377 > (반도체) 4,991 > (조선) 4,130

** 석유파동('78~'80) 228억불, 외환위기('97~'01) 371억불, 글로벌경제위기('08~'12) 2,924억불

◈ 국내외 건설경기에 따라 변동성이 심한 '수주산업'

【 `00~`17년 건설수주 추이(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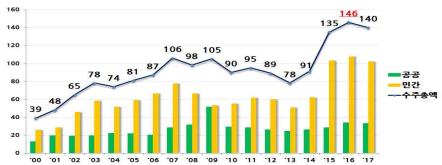

【 `00~`17년 해외건설수주 추이(해건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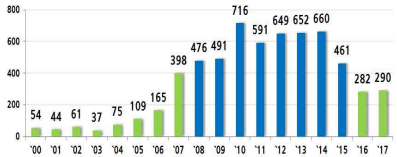

○ 수주산업 특성상 SOC발주규모, 주택경기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하며, 건설경기 침체 시 **GDP 변동성을 높이므로*** 안정적 관리 필요

* 건설업 수요 10% 위축 → 경제 전체 생산 40.9조원↓, 고용 26만6,000명↓(현대경제硏)

◈ 복잡한 다단계 생산체계를 가진 '협력기반 산업'

○ 건설산업은 **기획-설계-시공**(재료, 장비 조달)-**유지관리**로 이어지는 장기간에 걸친 생산과정에서 **다양한 생산주체가 참여**하며,

- 시공분야는 **원도급사**(종합, 5개 업종)-**하도급사**(전문, 29개 업종)-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체계**로 인해 **상생협력이 필수적인 산업**

○ 특히, 공공인프라 건설 등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 재정투입액 年 약 40조원, 전체 건설시장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 **불합리한 원-하도급 관계, 부실업체 퇴출 부진** 등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건설산업의 **대국민 이미지***는 상당히 부정적

* 일반 국민 80.2%, 건설업자 70.3%가 불공정산업으로 인식(국토부, '17.9~10)

- **수직적 생산과정**에서 **위험과 손실**을 **하위로 전가**하는 관행이 일상화되고, **입찰담합, 페이퍼컴퍼니** 등 **부조리**도 만연한 상황

◈ 국내 시장의 획기적 확장이 어려운 '성숙기 산업'

○ **선진국 사례***와 **국내 SOC수준** 등을 감안할 때, 국내 건설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어 **양적 확대를 기대하기는 곤란**한 상황

* 1인당 GDP가 1.5만불 이상인 경우, GDP대비 건설투자 비율은 감소(역 U자 가설)

【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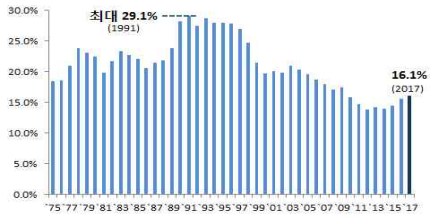

【 주요국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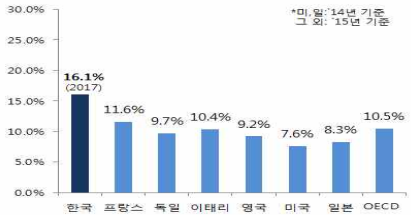

2 국내외 건설경기 동향

◈ 국내 건설경기는 호조세가 이어졌으나, 향후 둔화가 예상됨

○ (건설투자·수주) **건설투자**는 **'18년 2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3분기 8.9% 감소하였으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17년부터 감소세**

* 건설투자 증감(%): ('14) 1.1→ ('15) 6.6→ ('16) 10.3→ ('17) 7.6→ ('18.1~3Q) **△3.3**
건설수주 증감(%): ('14) 16→ ('15) 48→ ('16) 8.1→ ('17) **△3.1**→ ('18.1~3Q) **△6.9**

- **신규 주택착공 감소, SOC예산 추이***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건설경기 조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국은행 **'19, △2.5%** 등)

* SOC예산: ('16) 23.7 → ('17) 22.1조 → ('18) 19조 → ('19) 19.8조원(4.2%↑)

【 건설투자 장기추세(`03~`18, 한국은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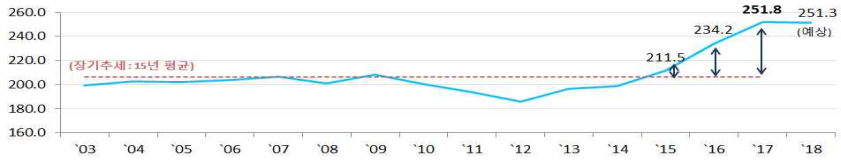

○ (**고용동향**) 건설업 **취업자 수**는 '14년 이후 증가세로, '18년 11월 **3% 증가한 212만명**이나, **경기 둔화**에 따른 **하방압력 증가** 전망

* 건설업 취업자(만명): ('14) 183 → ('15) 185 → ('16) 187 → ('17) 199 → ('18.11) 212

◈ 해외건설 수주는 `1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향후 보합세 전망

○ '15년, '16년에 저유가 여파로 **해외수주가 급감**(30%이상↓)하였으며, **'18년 321억불**(10.7%↑)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세**를 보임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해외수주(억불)	591	649	652	660	461	282	**290**	**321**
(전년대비%)	(△17.5)	(9.8)	(0.5)	(1.2)	(△30.0)	(△38.8)	(2.8)	(10.7)

- **금리 인상, 저유가** 기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낮은 **PPP 위주 사업 증가**로 인해 당분간 **수주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건설시장은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개발사업 위주 재편

○ '19년 세계건설시장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11.6조불 규모** 전망('18년 대비 6.4%↑, IHS)

○ **우리 주력시장**인 **중동, 동남아** 등에서는 도급사업이 아닌 **민간 자본을 활용한 "PPP(민관협력) 사업" 추진**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

* 사우디 : 국가전환계획(NTP) 등을 통해 PPP를 확대하겠다는 목표 발표
필리핀 : 아키노 전 정부가 추진하던 17대 PPP 프로젝트 재추진 예상

- 이에 따라 **도급사업 위주**(주로 EPC사업)로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글로벌 **수주 실적**은 **급감**하였으나,

-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선진국의 경우 **유가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15년도 수주액**이 **전년대비 증가**(또는 동일수준)

* 선진국 수주액(억불, '14→'15) : 프랑스(342→361), 독일(234→247), 스페인(218→216)

◈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신시장 선점 노력도 가속화

○ (**국가적 대응**) 선진국*은 최근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금융·인력지원, 공공발주 개선** 등이 활발

* 英 정부 시범사업 위주, 日 로봇기술, 규제완화 중심, 美 인센티브, 지원 추진 중

○ (**융복합 확대**) **구글, 테슬라** 등 세계적인 IT기업들이 스마트시티에 진출, **IoT를 활용한 도시관리**와 **모듈러 공법 등 신기술** 적용 추진 중

- 향후 건설 수요의 한 축이 될 **스마트시티**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으로, 글로벌 시장은 **'22년까지 2.1조 달러 규모**로 성장 예상(BCG)

○ (**기술개발**) 선진국은 최근 핵심 디지털기술인 **BIM 기반 데이터 플랫폼 적용 의무화** 추세*이며 R&D 및 인센티브 부여

* 英·싱가포르는 3D BIM제도를 공공건축의 80% 적용 등 활성화 단계 진입

<별첨> 주요국의 건설정책 방향

□ (미국)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5,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업확대 계획 발표

○ 노후화된 **공공 인프라 성능개선**(도로, 공항, 교량 등 교통분야 중심)에 대규모 자금 투입, 송유관, 정제시설 발주 확대 등 건설 활성화 예상

* GDP 대비 공공 인프라 투자 비율('14년 기준) : **(美) 2.4%**, (中) 9%, (유럽) 5%

□ (영국) **Egan Report**('98) 이후 **건설산업 혁신운동**(Rethinking Construction) 본격 돌입, 최근 **Construction 2025**('13) 등 **생산성 향상 중심**의 전략 추진

○ (**Construction2025**) 건설산업 혁신 **5대 비전을 제시**하고, 영국 **정부와 건설산업계의 공동목표** 설정 및 역할 분담을 통한 실천

< 'Construction 2025' 주요 내용 >	
주요 비전	(1)PEOPLE: 다양하고 재능있는 인력을 유지하는 산업 (2)SMART: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스마트산업 (3)SUSTAINABLE: 저탄소 시대 주도하는 녹색산업 (4)GROWTH: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 (5)LEADERSHIP: 건설산업 다양한 단체의 연합을 통한 추진
정부·업계의 공동 목표	▸사업비(Initial Cost)와 총 **생애주기비용 33% 저감** ▸공사기간 **50% 단축**, **건설자재 수출입격차 50%감소** ▸시설환경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50% 저감**

□ (일본)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노동력을 매울 수 있는 **ICT, IoT, 로봇기술 등을 활용**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추진

○ (**i-Construction**) 2025년까지 건설현장의 **생산성 20% 향상**을 목표로 **기술력 향상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수립·추진(2016년~)

- ①정보화시공, ②로봇, ③CIM 등 선결 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등 지속적인 R&D에 더한 **ICT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

* 日 국토교통성은 i-Construction, 인프라 유지보수 혁명, 고품질 인프라의 해외 전개 등을 포함한 20개의 생산성혁명 프로젝트를 발표('17.1월)

□ (싱가폴) 2020년까지 **인력 숙련도 고도화**, **건설생산성 펀드** 조성, **BIM 협력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2차 건설생산성 로드맵** 추진

3 건설산업의 문제점 분석

[1] 건설기술 → 선진국 대비 기술력은 80%, 생산성은 50% 수준

□ (**공종별**) **플랜트 분야**(누적수주의 58%)의 기업 경쟁력은 높으나, 첨단 인프라, 초고층빌딩 등 **주요기술**은 **Global Top 대비 70~80% 수준**

○ 건설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R&D 투자**도 매우 **저조**

【 Global Top 대비 주요 기술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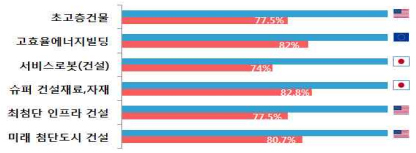

【 업종별 R&D 투자규모(매출액 대비) 】

□ (**공정별**)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등 다양한 건설프로젝트 중 지나친 **시공 편중**(해외수주의 97%)으로 **설계, PM, CM역량**이 극히 취약

* 공정별 해외시장 매출 점유율('16, ENR): (설계) 1.8% vs (시공) 7.3%

○ 최근 해외건설시장에서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PPP사업***은 리스크 관리, 금융주선 역량미흡 등으로 수주실적이 미미('17. 3건, 16억$)

* 신흥국의 투자개발사업(PPP) 시장규모(WB): ('05) 403억$ → ('15) 1,199억$

○ 주력시장인 **시공분야**도 선진국 대비 **노동생산성**이 **50% 수준**으로 개도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질 경우 **급격한 입지위축 우려**

【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기업 】

【 건설업 노동생산성(단위: $/시간, '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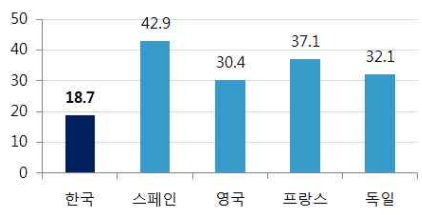

(2) 생산구조 → 직접시공 기피, 지나친 외주화 선호

□ (**종합→ 전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종합·전문업계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로 **생산구조**가 **경직화**되고 건설업체간 **공정경쟁**을 **저해**

* 복합공사 원도급은 종합, 전문공사 하도급은 전문업체만 도급받도록 업역을 구분하고 위반시 무등록시공으로 처벌(건설산업기본법, '76~)

○ 40년 이상 지속된 **시공자격 제한**으로 종합업체의 **직접시공 기피***, 전문→ 종합으로의 자연스러운 **기업성장 저해** 등 부조리도 심화

* 직접시공 비율(BCG, '17): (미국) 20~50%, (독일) 50~80% vs (한국) 0~10%

□ (**전문→ 시공팀**)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는 **전문업체**도 실제시공은 **십반장 등 무등록 시공조직**을 활용하는 등 **외주화**에 의존

○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아래로 전가하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생산구조의 **효율성**이 낮고* **시공품질**도 저하

* 중층 생산구조로 인해 선진국과 비교할 때, 10% 이상의 비효율 발생(BCG)

(3) 시장질서 → 부실기업과 불공정 관행으로 투명성이 낮은 산업

□ (**부실기업**)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업체수**가 많은 것은 아니나 경기 상승국면에 유입되는 **페이퍼컴퍼니 과다** 등 질적 이슈 존재

* 건설업체수('18.1): 61,197개(종합업체: 12,011개 + 전문업체: 49,186개)
** 종합업체(개사)/건설투자(십억$): (한국) 47.8, (영국) 194.6, (독일) 181

○ 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로 고정비용을 줄이고 시공능력없이 낙찰만을 노리는 **부실업체***가 **입찰질서**를 교란하고 산업부담을 초래

* 총 건설업체 중 입찰목적의 부실·페이퍼컴퍼니는 15% 내외 추정(BCG)

□ (**불공정 관행**) 발주자의 '**부당특약***' 강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발주자→ 종합→ 전문의 각 생산단계별로 '**갑질 관행**' 존재

* 공사비 증액청구권 포기, 민원처리 등 건설업체와 무관한 역무부과 등

○ 각종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은 최종적으로 **임금삭감, 사회보험 가입누락** 등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유발

(4) 일자리 → 낮은 일자리 질 + 취약한 일자리 확충기반

□ (**일자리 질 저하**) 건설업 취업자 상당수가 일용·**비정규직 근로자**(기능인력 비중: 60.6%, '17)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측면

○ 열악한 근로여건과 빈번한 안전사고로 **청년층**이 취업을 기피하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중(40대 이상 취업비중 84% vs 全산업 65%, '17)

* 건설업 취업자 중 30세 이하 비중: (한국) 4% vs (일본) 10%

○ 청년층 취업기피에 따른 **숙련인력 부족***을 불법체류 외국인력 고용으로 메우는 **악순환**으로 인해 **산업기반 붕괴 우려**

* 건설 숙련인력 수급전망(고용부): ('14) △4만명→ ('19) △14만명

□ (**일자리 확충 불투명**) **건설업 고용규모**는 경기 변동에 지나치게 민감,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산업의 **고용여력 증대**는 부진

○ 취업자의 83%가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어 청년층이 선호하는 안정적이고 비전있는 **건설 일자리**가 **부족**

*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 건설업체 비중: ('08) 47%→ ('15) 59%

◇ <u>**건설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u>

① (**낙후된 기술**) IoT(건설 9.1, 전산업 평균 11.9), 빅데이터(건설 4.5, 평균 14.1) 등 활용부진(고용정보원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도 조사, '18.1)

② (**생산성 향상에 무관심한 기업**) 건설근로자의 85.4%가 건설사가 아닌 팀·반장을 통해 시공에 참여(건설근로자 공제회 조사, '17.4)

③ (**뿌리깊은 불공정 관행**) 국민의 80.2%가 건설산업을 대표적인 불공정 산업으로 인식(국토부 설문조사, '17.10)

* 불공정 하도급 > 입찰담합 > 갑질관행 순으로 불공정의 원인을 지적

④ (**피하고 싶은 건설일자리**) 건설 일자리의 직업만족도, 건설 관련 학과의 전공 선호도는 최하위권

* 건설일용직, 용접공, 미장공은 직업 만족도 최하위 직업(직업능력개발원, '14)
이공계 전공 인기도 분석결과, 건축·토목학과가 최하위권(동아일보, '16.3)

Ⅳ.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방향

1. 비전과 목표

비 전

공정경제에 기초한 건설산업 혁신 성장의 기틀 마련

기본 방향

◈ **산업구조 개편과 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략적 진출과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3대 목표	중점과제
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	1. 생산구조 규제 혁신
	2. 건설기업 혁신 성장 지원
	3. 부실·불법업체 퇴출
공정한 동반성장 기반 마련	4.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5. 공정한 원-하도급 관계 조성
	6. 산업 전반의 갑질 관행 근절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7. 해외시장 진출 역량 확보
	8.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활용 촉진
	9. 건설산업 안전 확보 및 신시장 창출

2. 제5차 기본계획 체계

목표(3)	중점과제(9)	추진방안(20)
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	1. 생산구조 규제 혁신	① 건설업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
		② 원도급자 직접시공 활성화
		③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2. 건설기업 혁신 성장 지원	④ 기술력 중심 발주제도 개편
		⑤ 중소 건설기업 성장경로 지원
	3. 부실·불법 업체 퇴출	⑥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 퇴출
		⑦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공정한 동반성장 기반 마련	4.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⑧ 건설근로자 임금보장 강화
		⑨ 건설 근로환경 개선
		⑩ 숙련 기술자 및 기능인력 육성
	5. 공정한 원-하도급 관계 조성	⑪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⑫ 우수 협력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6. 산업 전반의 갑질 관행 근절	⑬ 공공 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
		⑭ 대형 건설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7. 해외시장 진출 역량 확보	⑮ 설계·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⑯ 지원체계 고도화로 진출시장 다변화
	8.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활용 촉진	⑰ 핵심 건설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⑱ 민간 기술개발 및 품질 확보 촉진
	9. 안전 확보 및 신시장 창출	⑲ 스마트 인프라 발주 및 노후 인프라 개선
		⑳ 친환경 건설 활성화 및 건설안전 확보

Ⅴ. 세부 추진방안

목표1 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

과제 1. 건설산업 생산구조 규제 혁신

① 건설업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

□ (**현황**) 시공기술, 기업규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종합·전문 간 업무영역**을 **제한**(건산법 §16), **업종·등록기준**도 시공역량 검증에 한계

○ (**업역**)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종합업체**(토목, 건축 등 5종)만, 단일 **전문공사 원·하도급**은 **전문업체**(29종)만 가능하도록 업역을 규제

* (예) 도로공사(철콘 + 토공 + 포장 + 구조물): 토목업체(종합)에만 발주가능, 전문업체 컨소시엄, 4개 전문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업체의 원도급은 불가능

- **종합업체**는 실제 시공이 아닌 수주 후 하도급 일감을 나눠주는 역할에 치중하여 **시공기술보다 입찰·영업능력을 키우는** 관행 형성

- **전문업체**는 공사물량을 **종합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갑을관계 탈피 곤란, 저가 하도급 해결을 위해 **원도급 시장 진출 시도***도 지속

* 소규모 복합공사 원도급 허용, 분리발주, 주계약자공동도급 확대를 지속 주장

○ (**업종**) **지나친 업종 세분화**로 업종 간 업무내용의 구분이 모호하여 갈등이 많고 **공법**의 **융복합 추세**에도 뒤떨어지는 측면

○ (**등록기준**) **자본금 요건**은 지나치게 **과중**하고, 기술능력은 많은 기술자를 요구하는 반면 **경력요건**이 없어 **시공역량 검증**에 한계

* 자본금: (日) 5천만원, (美) 1,500만원 내외 vs (韓) 12~2억원
기술자: (美) 1명(4년 이상 경력), (日) 1명(5년 이상 근무) vs (韓) 최대 11명

□ (**개선방안**) **전문의 종합공사 시장 진출, 종합의 전문공사 도급**이 가능하도록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고, **업종·등록기준 개편**도 추진

① (**업역 폐지**)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전문업체**가 **상호 공사**(종합↔전문)의 **원·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업역 폐지**(건산법 §16 개정)

○ (**전문업체→종합공사**) 해당 공사의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업체**나 **전문 간 컨소시엄**('24년부터 허용)은 **종합공사 원도급 허용**

○ (**종합업체→전문공사**) 종합업체는 종합업종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기 위한 **세부 전문공사 원·하도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되,

* (토목) 도로, 항만, 교량, 철도, 댐, 하천 등 / (건축) 건축법상 건축물

-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하여 총 공사금액 **10억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금지,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종합 수주는 **'24년**부터 허용

○ (**상호진출 요건**) 종합↔전문시장 진출 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시공**해야 함을 **원칙**(제한적 예외 허용)으로 함

○ (**개편 일정**) 업종개편, 하위법령 정비, 업계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2년 간 시행**을 유예 → ('**21**) **공공공사** → ('**22**) **민간공사** 順 시행

② (**업종 개편**) **단기적**으로는 현행 업종체계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의 **업무내용 조정**, 중장기적으로는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

○ 시설물유지관리업종* 등 **타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종 등 현안 업종 중심으로 **단기 개편안** 마련

* 2개 이상 공종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수행으로 만능면허화 비판 존재

○ 중장기적으로 **업역규제 폐지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업종체계 전반을 대업종화하면서 '**시공실적·역량**'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

- 대업종화와 함께 발주자에 **공사실적, 전문인력, 처분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를 도입하여 전문성 강화

③ (**등록기준 조정**) **자본금 요건**은 단계적 하향하고, **기술자 요건**은 필수 경력을 요구하는 등 강화 추진

○ 종합·전문업종간 연계 강화도 검토(예: 전문 1~2년 영위 후 종합 등록)

② 원도급자 직접시공 활성화

□ (**현황**) 원도급자인 종합업체의 낮은 **직접시공 비율**과 **일괄 하도급**의 관행화로 **산업 생산성이 낮고*** **품질·안전 문제**도 지적됨

* 시간당 노동생산성 : 한국 18.7$, 스페인 42.9$, 독일 32.1$, 영국 30.4$

○ 선진국*에 비해 **국내 종합업체**는 일부 소규모공사(직접시공의무)를 제외하면 **직접시공 비중이 매우 낮음**(10%이내)

* 원도급 직접시공 비중: 영국 10~30%, 미국 20~50%, 독일 50~80%(BCG)

- 현행 **건산법**은 종합업체는 직접시공보다는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여 **직접시공을 이례적으로 인식**하는 관행 확산

○ 직접시공 기피는 **위험의 외주화, 손실의 전가, 시공기술 및 현장 관리 역량 저하, 공사비용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

○ 시공능력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퇴출 등을 위해 **직접시공의무제**를 도입('05)하였으나 **소규모 공사에만 적용***되고 편법이행 사례**도 발생

* 3억 미만: 50%, 3~10억: 30%, 10~30억: 20%, 30~50억 미만: 10%
** 자재 구입비, 일반관리비 등 경비성 지출만으로 직접시공비율을 쉽게 충족

□ (**개선방안**) 대형 건설사의 **시공기술력 제고**와 소규모 공사의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활성화** 추진

○ 우선 **1종 시설물*** 등의 핵심공종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직접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대상 확대 검토

* 500m 이상 교량, 고속철도 터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물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고 공사규모가 큰 특별관리 시설물(시특법)

- **직접시공 실적**은 **시평** 및 **입찰 실적에서 가산**하는 인센티브 부여

○ **직접시공의무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산정기준도 **노무비 비율로 개편**하여 페이퍼컴퍼니 퇴출도 추진

* 예) 50억원 미만 → (1단계) 70억원 → (2단계) 100억원 미만

③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 (**현황**) 현행 건산법은 조선 등 타 수주산업과 다르게 종합(원도급)→전문업체(하도급)간의 **1단계 하도급**만 인정(위반시 영업정지, 과징금)

○ 실제 시공은 건설업체가 다양한 **무등록 시공조직***을 활용하는 형태로 **수수료 편취, 불체자 고용 등 부당 노동행위**에 취약

* 1) 小팀장형: 5명 내외의 소규모 시공팀을 이끌며 실제 시공 담당
2) 현장소장형: 여러 팀(20여명)을 이끌고 여러 小팀장에게 공사 분배
3) 채용팀장형: 실제 시공은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 모집, 소개 수수료만 수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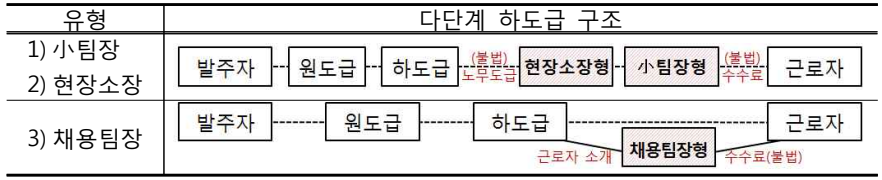

○ **선진국**은 시공팀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 **사례***가 많아 **다단계 하도급**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말단 생산체계 혁신 필요**

* (**英**) 경력 근로자가 지역단위로 영업하는 프리랜서 회사를 설립, 시공참여
(**獨**) 건설업체가 십반장 등 시공팀은 물론 중장비 운전자까지 직접 고용
(**日**) 소형 건설업체 등록을 통해 관리(1인 건설업자 등록이 9만건 내외)

□ (**개선방안**) 유형별로 시공팀을 **건설업체 고용**이나 **업체 등록** 유도

○ (**小팀장형: 건설업체 고용 유도**) 공공공사(예: 도공 300억 이상)에서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제출**토록 하여 **인센티브 부여**

* 우선 도공 등 국토부 산하기관 공사(예: 300억원 이상)에 시범적용(계약특수조건, '18~), 시공팀장 참여경력은 기능인등급제 등급산정 시 우대조치

○ (**현장소장형: 건설업체 등록 촉진**) 현장근로 경력이 있는 **기능·기술인력**이 설립한 건설업체*는 시평 우대 등 **인센티브**(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 자본금, 기술자 등 현행 건설업 등록요건을 일부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

○ (**채용팀장형: 퇴출 유도**)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 고용만 알선하는 **무등록 알선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처벌 강화도 검토

과제 2. 건설기업 혁신 성장 지원

④ 기술력 중심 발주제도 개편

□ (**현황**) 모든 기관과 대부분 공종에 대해 동일한 발주제도로 낙찰자 결정 ⇒ **발주기관의 역량**, 주택·도로 등 **공종의 특성 반영 곤란**

○ 아울러 과거 해당업체가 수행한 **공사의 성과, 기술자의 역량**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정량적 평가요소**만으로 낙찰자 결정

○ 발주제도의 변별력이 낮아 **스펙관리**(가감점 등)와 **입찰가격***이 낙찰자 결정을 좌우하여 **기술경쟁을 저해**하고 **입찰용 회사를 양산**

* '16년 종심제 49개 사업 모두 가격점수 1위(균형가격에 가까운) 업체가 낙찰

- 그간 새로운 발주제도를 계속 도입해왔으나, 시간이 지나면 **저가 경쟁 위주로 변질***되어온 사례

* 종심제 평균낙찰률: ('14~'15) 83.1% → ('16) 79.3% → ('17.11) 78.8%

※ 영국 등 선진국은 **엄격한 자격요건**을 통해 3~5개사를 선정(short list)하고, 이들에 대한 **정밀평가 및 협상**을 통해 낙찰자 선정

□ (**개선방안**) 공공공사 **발주제도의 변별력 제고**를 통한 견실업체의 공사 수주 적극 지원

○ **국가재정,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대책은 사례검증과 업계·발주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발표**(기재부)

○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 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 제고**에 초점을 두어 발주제도 개편

* 적격심사(300억원 미만): 평균 300~400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

** 종심제(300억원 이상) 낙찰률: ('14~'15) 83.1%→ ('16) 79.3% → ('17) 78.8%

○ **창의적 대안제시형 낙찰제도 도입**, 고난이도 공사에 대한 **기술 변별력 강화** 등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둔 개선방안 마련

⑤ 중소 건설기업 성장경로 지원

□ (**현황**) **건설 일자리의 83.3%**('15년)를 창출하고 있는 **중소 건설기업**은 그 성장이 지체되고 있으나*, **건실한 성장을 유도하는 지원책은 부족**

*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한 건설업체 비중 : 47%('08년) → 59%('15년)

○ 중소기업은 입찰, 시공 과정에서 재무관리, 공법 설계, 인력관리 노하우 등 **다양한 컨설팅 수요**가 있으나* **시장 형성이 미흡**한 상황

* (英) 시공관리, 공법 자문 등 / (日) 고용관리 어드바이저 파견·컨설팅

○ 전 산업 대상 **컨설팅 지원사업**(중기부)이 있으나, 제조업·서비스업 위주로, **건설 맞춤형 지원이 어렵고*** 1개사 지원규모도 작은 편

* '16년 전체 컨설팅 지원 대상 995개사(건당 1,150만원 지원) 중 건설업 12개사

□ (**개선**) **'혁신성장 컨설팅 바우처' 사업**을 신설하여 건실한 **중소 건설기업의 성장경로** 지원, 강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

① (**혁신성장 바우처**) 공모를 거쳐 **고용창출이 우수**한 **시공·설계분야 중소기업**을 선정(정부·업계 합동심사), **컨설팅** 비용 지원

* 우선 산업계 재원으로 연간 20개 내외 업체에 기술·재무·노무관리 컨설팅

- **일자리 창출실적이 우수**한 우량 중소업체에 우선 지원을 추진하고 추후 공공재원 마련도 검토

- 건설기업이 컨설팅사를 선택·평가 가능한 체계를 키스콘 등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신규 구축**

② (**강소지원**) **기술력 기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건설 新기술** 보유(또는 활용)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비용 지원 대폭 확대**('19)

- 국가별 **현지 하도급업체 정보**를 수집·공유하여 대기업 진출 시 현지보다 **상대적 우위의 국내 강소기업을 매칭**하는 방안 검토

③ (**유지관리 시장 확대**)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강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정적 유지관리 시장 확보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국회 통과('18.12)

과제 3. 부실·불법업체 퇴출

⑥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 퇴출

□ (**현황**) 자본금 가장납입, 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등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가 여전히 많은 상황

* 등록기준 미달업체 퇴출실적: ('14) 586 → ('15) 367 → ('16) 1,116개사

○ 시공경험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서류상 요건만 갖추어 **공공공사 낙찰**받는 사례가 반복되어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 이들 업체는 **대표자 명의변경, 업체 양도, 등록증 대여** 등을 통해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부당이득만 편취**하는 경우가 대부분

○ **5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기술자의 중복배치(3개 현장)를 허용하여 **현장 인원**을 **실제 배치하지 않고 명의만 빌리는** 경우 다수

* 5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1개 현장에 1명의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상주배치

□ (**개선**) 旣운영중인 **부실기업 조기경보시스템**(KISCON)과 다양한 유관기관 정보망을 연계, 부실업체에 대한 적발능력을 대폭 제고

① (**자격증 불법대여 적발**) 종전 기술인 DB(기술인협회) 활용방식*에서 **고용보험정보**(고용정보원) **연계방식**으로 전환, 단속 실효성 제고

* (기술인 DB) 기술자 본인의 허위신고 가능, 건설업체간 중복등재만 확인
(고용보험) 본인의 허위신고 불가, 타 업종(조선 등)과 건설업 간 중복 확인

② (**등록증 대여업체 점검**) **착공신고 강화***를 통해 보유 기술자에 비해 수주규모가 큰 업체를 특별점검(KISCON-건축 인허가시스템 연계)

* (현행) 착공신고시, 시공사 정보 임의기재→ (개선) 필수기재사항으로 변경

③ (**현장인원 배치 강화**) 안전강화, 부실업체의 과다수주 방지를 위해 소액 공사의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 축소(건산법 시행령 개정)

* (현행) (5억 이상) 1명/1개소, (5억 미만) 1명/3개소 중복배치 허용
(개선) (5억 이상) 1명/1개소, (3억~5억) 1명/2개소, (3억미만) 1명/3개소

⑦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 (**현황**) 부실시공 방지, 페이퍼컴퍼니 퇴출 등을 위해 현행 건산법은 원칙적으로 **종합**(원도급)→**전문업체**(하도급)간 **1단계 하도급**만 인정

○ **하도급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영업정지 등)에도 불구, 다양한 형태의 **다단계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종합업체간 (일괄)하도급, 전문업체간 불법 재하도급 등

○ 하도급 질서 교란행위는 **당사자간 이면계약**으로 이루어져 적발이 어렵고, 일부 업체에 의해 **상습·반복***되는 경향

* 불법 재하도급, 종합 간 하도급 등으로 5년내 2회 이상 처분받은 업체는 66개사

□ (**개선**) **건설산업정보망** 등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과 불법 행위의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상습적 위반업체**는 시장에서 **영구퇴출**

① (**의심업체 추출**) 보증정보 대조, 공사실적 중복여부 검증, **재무제표 분석*** 등을 통해 **의심업체**를 추출, 지자체 점검 추진

* 공사 수주액, 업체규모 등에 비해 매출액, 당기순이익이 큰 업체 집중조사

② (**3진 아웃제 도입**) 불법 재하도급 등 하도급 질서 교란행위로 **3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건설업 등록말소** 추진

* 일정기간 내 3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등록말소

③ (**불공정 단속 강화**) 지방 국토청에 **건설현장 부조리 해소센터**를 확대·개편하고 전담인력도 증원, **불공정 신고포상금제*** 신설 추진

* 국토부·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협의(법무부)

④ (**불법행위 정보 공개**) **건설업체 준법등급 공개제도***를 신설하여 발주자 등 **건설산업의 소비자 보호**도 강화

* 과징금, 과태료 등 처분이력을 공개하는 근거 마련(건산법 개정)

목표2 공정한 동반성장 기반 마련

과제 4. 건설산업 일자리 질 개선

⑧ 건설근로자 임금보장 강화

□ (**현황**) 일부 건설사의 **공사대금 목적 외 사용**, 2~3개월치 임금을 사후 지급하는 **유보임금 관행** 등으로 타 산업에 비해 **임금체불 빈번**

* '16년 전 산업 대비 건설업 체불액 비중은 16.6%(2,366억원)로 체불액 과다

○ 원도급사 → 하도급사 → 십·반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관행화

□ (**개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정임금제** 등을 도입

① **(발주자 임금직불)** 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확대**

* 건설사의 임금 등 인출·유용을 제한하고, 근로자 등에게 송금만 허용

- 우선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현장**에 적용('18)하여 성과를 홍보하고,

-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법 개정을 거쳐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고, **민간공사**는 유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② **(적정임금제) 발주자가 책정한 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Prevailng Wage) 도입

- **시범사업**(매년 10개 내외, '18~'19), **시중노임단가체계 개편**(숙련도반영, 산정주체 변경),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화 추진

- 표준 공사기간 마련('19.3), 시중노임단가 개편(숙련도반영, 산정주체 변경)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일요 휴무제** 등의 **현장 안착**을 지원

⑨ 건설 근로환경 개선

□ (**현황**) 건설근로자는 대부분 비정규 일용직 근로자로 **사회보험 가입비율***이 낮고 **노후보장**이 미흡하며 현장 근로여건도 열악

* '16년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비율 15.3%(타 업종 비정규직은 41.9%)

○ 건설근로자 노후 생계보장을 위해 **퇴직공제제도**를 운영 중이나, **납입액**(일 4,200원)이 적고 **적용공사도 제한**되는 등 실효성 부족

○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경우, 도급단계 최말단에 위치하여 **임대료 체불** 등이 빈번하고, **퇴직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 노후보장도 미흡

□ (**개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내실화 등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사회보장 강화)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 확대(월 20일→ 8일 이상 근무)에 따른 공사비 반영요율 인상, 납부확인제 도입 등 **가입률 제고**

○ **(퇴직공제 내실화) 납입액·대상공사**를 지속 **확대**

- **日 납입액**을 4,200원 → **5,000원**으로 인상하고, 납입한도액도 현행 5천원 → 1만원으로 인상

- 대상공사도 **공공**은 **3 → 1억 이상, 민간**은 **100 → 50억 이상**까지 확대('19년 중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등 대상공사 지속 확대)

○ **(현장복지)** 편의시설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화장실·탈의실 등 현장복지시설 **설치기준도 세분화**

○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장**을 강화하고, **1인 사업자**에 대한 **퇴직공제 가입특례** 허용

- 대여대금 보증을 현행 계약건별 개별 보증방식에서 **원·하도급 업체별 공사현장 단위**로 **묶어서 보증하는 방식**(근보증)으로 개편

- 보증서 미가입 건설사 처벌 강화, **지연 이자제** 도입 등 추진

⑩ 숙련 기술자 및 기능인력 육성

□ (**현황**) 청년층 등 신규인력의 건설업 취업 기피로 인해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내국인 **숙련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

○ 기능인력의 비정규직 고용 특성상 개별 기업이 **숙련인력 육성에 관심이 부족**하고, 직업전망도 불투명하여 신규인력 진입 기피

○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체계*가 미흡**하고, **일자리 매칭 시스템 미비**로 인력파견업체 등을 활용한 구인·구직이 일반적

* 건설기능인 전문양성기관은 1개소에 불과(연 300명 내외 기능인력 배출)

□ (**개선**) 숙련인력으로 성장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업 전망**을 제시하고, **교육훈련체계 개선, 일자리매칭 강화** 등 추진

○ **(직업전망 제시) 건설기능인 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추진

- 건설근로자가 기능향상, 경력 축적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인등급제 도입

* ('18~'19) 등급분류체계 마련 → ('20) 시공능력평가, 건설업 등록기준 등 반영

- 건설현장에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전자카드, 지문인식)을 도입하여, **경력관리**를 **체계화**하고 **사회보험 누락** 등 부조리도 방지

* ('18.下) 국토부 300억원 이상 신규공사에 선도적용 → ('19) 300억원 이상 全 공공공사로 확산(건설근로자법 개정, '19년 중)

○ **(인력양성체계 개선) 권역별 거점 훈련기관**을 지정하고 **기능향상 확대**(8,000→12,000명), **훈련 프로그램 다양화** 등 지속 추진

- 교육기관 경쟁 활성화 및 독과점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등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기술인 교육을 내실화**

○ **(일자리매칭 활성화)** '**건설워크넷**(기술자 일자리 매칭)'의 건설기업, 지자체 등 **구인자와 협력을 확대**하고, 활용 **인센티브도 추진**

○ **(고용우수업체 인센티브)** 전년대비 **정규직 채용규모**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등 우대

과제 5. 공정한 원-하도급 관계 조성

⑪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 (**현황**) 경직적 원-하도급 관계에서 원도급사가 져야 할 부담을 **대금 후려치기***를 통한 **저가 하도급**으로 충당하는 사례가 빈번

*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을 경험한 전문업체는 36.1%(전문協 실태조사)

○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빌미로 하도급 입찰시 **물량내역** 등 기본적인 정보를 협력사에 제공하지 않는 '**깜깜이 입찰***'도 존재

* (사례) 일부 원도급사는 하도급 입찰업체에게 공사물량이 많은 것처럼 속여서 낮은 단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허위물량을 삭감

○ **저가하도급**은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제도적 방지장치 미흡**

- **공공공사**에 적용중인 「**하도급적정성 심사***」는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이 **관대**하고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자 선정 시 **적용 배제**

*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의 82%, 발주자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적정성을 심사, 원도급사에 하도급 금액 증액 지시

□ (**개선방향**) 하도급자 선정 시 **정보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저가하도급 방지와 협력 우수업체 인센티브**를 통해 공정한 원-하도급관계 유도

① (**하도급 입찰 정보공개**) 원청의 하도급社 선정시, 입찰참가 등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공개**(건산법 개정, '18.12)

* (**민간**공사) ① 물량(설계서), ② 공기, (**공공**공사) ①,② + ③ 공종별 기초가격

② (**저가하도급 방지**) **공공공사**는 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민간공사**는 저가하도급을 주는 **원청**의 **보증료 부담 상향**

* 저가하도급 판정기준 상향(예가대비 60→ 64%), 간접비 포함여부 심사, 경쟁입찰 등 하도급 적정성 심사 면제사유 축소(건산법 시행령 개정)

⑫ 상생협력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현황**)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입찰가점**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나 **평가방식, 가점 수준** 등 개선 필요

○ 공공공사 입찰시, 하도급계획을 평가하고 있으나 **하도급금액 평가 변별력***이 낮고 **소규모 공사**(50억원 미만)는 하도급 계획을 未평가

* 저가 하도급 판정기준인 하도급률 82% 이상이면 모두 만점을 부여

○ **건설업 상호협력평가***는 **원도급자 단체**인 **건설협회**가 평가업무를 대행하는 등 **공정성 시비**가 있고 **평가항목**도 일부 조정 필요

* 원도급사의 하도급 물량, 하도급 대금지급 등을 평가, 입찰가점 등 우대

□ (**개선**) 입찰제도 개선을 통해 **하도급금액 평가 변별력 제고, 평가 대상 공사 확대**를 추진하면서 **상호협력평가**도 전반적으로 개선

○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주체 변경**(건협 → 건협+전문협), **입찰가점 확대**(예: 0.1→0.5) 추진(국토부 고시개정 등)

○ 하도급 물량 위주 평가항목을 **하도급 낙찰률 등을 반영**하도록 조정*하여 **적정대가를 지급**하는 원도급사에 **인센티브** 부여

* 예) (현행) 하도급물량(20점) → (개선) 하도급물량(15점) + 하도급률(5점)

과제 6. 산업 전반의 갑질 관행 근절

⑬ 공공 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

□ (**현황**) **간접비 미지급 관행**, 예산절감이나 행정편의를 위한 각종 **부당특약 운영** 등 **공공발주자**의 '**갑질**'로 건설업계의 부담이 가중

○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시에도 간접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대부분 업체가 **소송***을 통해 해결

* '16.12월 기준 44건(2,048억원) 진행(국토부 17, 도공 9, 철도공단 18건)

-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17.1)으로 간접비 지급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업계는 **신청시기 제한** 등에 대한 추가 개선을 요구 중

○ 지속적 시정요구에도 불구, **건산법·계약예규** 등 상위법규에 위반되는 **부당특약 사례***도 반복('17.9월 현재 27건 시정조치중)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특별한 사유없이 건산법상 기간보다 장기로 운영,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90일 이후 가능하나 1년 이후에만 허용 등

□ (**개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관행을 개선**해나가고, **공공기관 부당특약**은 지속적 발굴·시정

○ 공공공사에서 **간접비 미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방안 마련**(국정과제)

* 예) 간접비 지급 대상사업 범위 및 시기, 신청횟수, 지급항목 조정 등

○ 공공발주자의 **부당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특약 심사제도**(주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도입 추진**(기재부)

○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개선, 표준 공기 제시, 노무비 산정기준 개선** 등 **적정**한 **공사원가 산정체계** 구축방안도 마련(기재부 협의)

⑭ 대형 건설기업 등 불공정 행위 근절

□ (**현황**) 건설기업의 시장을 교란하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나, 이에 대한 **제재 미흡**

① 대기업 계열사(건설 55개)간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위 처분을 받은 공사에 대해서도 시공실적을 그대로 인정 중

② **공동도급**을 명분으로 중소업체에 **입찰비용**을 **전가**한 후, **최종 계약**에서 중소업체를 배제하는 사례도 있으나 제도적 보호 장치 부재

③ 발주자-건설업체, 대-중소 건설업체 간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송을 통해 해결**되어 사회적 비용이 과다

- 신속한 갈등해소를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건산법, 재판상 화해효력 부여)를 운영 중이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

  * 분쟁조정 건수: ('13) 3건 → ('14) 31건 → ('15) 12건 → ('16) 42건

□ (**개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건설기업의 **부당한 거래 행위** 등에 대해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추진

① (**실적관리 강화**)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거래**로 처분(과징금)을 받은 기성실적은 **시공능력평가액에서 삭감**(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② (**중소업체 지위보호**) 건설업체가 민간공사에 대해 공동 수주 후, **일방적 지분 확대 등 계약내용 변경** 시, 과태료 부과(건산법 개정)

③ (**분쟁조정위 활성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 확대**, **DRB* 도입** 등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

  * Dispute Review Board(분쟁심사위원회): 사전에 발주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선정한 위원이 공사현장 수시 점검을 통해 분쟁발생시 조기해결

목표3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과제 7. 해외시장 진출 역량 확보

⑮ 설계·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해외건설 수주 규모에 비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설계·엔지니어링 역량이 낮고*** 단순시공 위주로, **어닝쇼크** 등 **수익이 불안정**함**

  * 미국 대비 우리나라 개념설계 역량은 73%, EU 대비 79%수준(생산기술연구원)
  ** (평균 수익률) 글로벌 10대 설계업체: 7.8%, 글로벌 10대 시공업체: 5.7%

○ **설계·엔지니어링**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다양한 **불공정 관행***으로 일자리 질이 열악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부진**

  * 비용지급 없는 추가업무 지시, 설계비 미지급 관행 등으로 인해 일자리 열악

○ 벡텔 등 세계적인 기업의 **수익 중 많은 비중**(기술용역 매출 25%)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관리(CM) 역량도 제고**할 필요

□ **개선방안**

① (**기술역량 강화**) **기술력이 우수한 Eng업체 선정**을 위해 발주제도를 가격 중심에서 **기술평가 중심으로 전환**(기술용역 종심제 도입)

- 국제기준과 유사한 **평가절차**(Longlist→Shortlist)를 통해 **정밀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 비중**을 **80~100%**(가격 20~0%)까지 **확대**

② (**CM 활성화**)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하는 선진국형 발주제도인 **시공책임형 CM*** 제도화

  * 설계초기 시공사 선정→시공 시 설계변경 최소화, 설계·시공 품질 향상
  ** 시범사업 확대('17, 건축 4개 사업 → '18, 토목) → 제도화(기재부협의, '19)

③ (**불공정 해소**) 발주청의 귀책으로 인한 Eng기술자 교체 시 불이익 면제, **턴키 및 민자사업자 선정** 시 **설계사 보호 강화**

⑯ 지원체계 고도화로 진출시장 다변화

□ 현황 및 문제점

○ **KIND 설립**('18.6), **펀드**(GIF) **확대**('18.7~) 및 **정보시스템 설계**('18~) 등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였으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시간 소요

* KIND 해외PPP 수주 추진 중으로 실적 없음, GIF 7호는 12월 조성으로 투자 미이행

○ 대형 시공 중심의 **양적성장에 집중**된 **인프라 외교**로 **시장다변화, 고부가가치 분야 진출 및 인력양성 등에 지원 미흡**

□ 개선방안

○ 고위급 외교 등으로 발굴하는 PPP 사업에 대해 **KIND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팀코리아*** **구성 및 수주 지원**

* 사업별 정부·민간·KIND·공기업·ECA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구성·운영

○ 신남방, 신북방 등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민관협력 금융지원 펀드**(3천억 규모)를 조성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PPP 진출 지원 강화

* 한-아세안 협력펀드(1,000억), 한-유라시안 협력펀드(1,000억) 등 총 3,000억 규모

○ 해외 공관, 주재원 등을 통해 현재는 제공하지 못하는 현지 인프라 기본계획, 초기 정보 등 **PPP특화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체계 구축**

*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19년 시스템설계, '10년 구축·운영)과 연계 추진

○ 시장다변화를 위해 중동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 대외정책인 신남방·북방을 연계한 **유라시안 인프라 협력*** **강화**

* (신남방)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9.下 잠정) 연계 고위급 인프라포럼 개최
(북방) 인프라협력 강화방안 마련, '북방경제협력포럼' 인프라 세션개최 등
** 진출방식 및 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국토교통 ODA발전방안 수립('19.6월)

○ 마이스터고 취업지원, 인프라 공기업 해외인턴 확대 등 **인적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과 청년들의 상생발전** 추진

과제 8.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촉진

⑰ 핵심 건설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 (**현황**)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성 향상** 기회에도 불구하고, 건설분야 **핵심기술 개발·활용에 대한 전략**이 미흡한 수준

○ 미래 건설시장 수요에 기반한 고난이도 **원천기술 개발**로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건설프로세스를 혁신할 필요

□ (**개선**) 미래 건설을 이끌어갈 핵심기술에 대해 **공공 R&D 투자**를 통해 건설 생산성·안전성 향상을 선도

○ **스마트 건설기술, 스마트 유지관리** 등 첨단기술 **융합형 R&D 사업**을 추진하여 현장에 핵심기술을 보급

○ 기존 건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발굴·개발

< 주요 스마트 건설기술 R&D 사업(안) >

구분	주요 기술	투자비용 및 기대효과
【스마트 건설기술】	• **BIM 플랫폼** 구축 • **건설자동화 로봇** 적용 • **공장형** 시공(모듈러, 가상시공)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수립('18.9)	·약 2,000억원('20~'25) ·건설 생산성의 획기적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스마트 유지관리】	• **IoT, 빅데이터** 기반 **최적의 유지보수** 기술 개발 • 시설물 내부손상 탐지 및 수명 자동 예측 기술 개발	·약 1,400억원('21~'27) ·선제적 시설물 관리로 인명피해 ·사회적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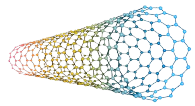 【스마트 건설재료】	• **고분자 탄소재료**를 활용한 철근 대체제 개발 • **나노소재**를 이용한 高내구성 콘크리트 개발	·약 1,600억원('21~'27) ·구조물 내진성능, 내구성·강도·유연성↑→비용절감, 화재·지진피해 최소화

⑱ 민간 기술개발 및 품질 확보 촉진

□ **(현황) BIM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는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은 더욱 낮아질 우려**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3D설계·시공관리·유지보수 총괄 데이터플랫폼 (**영국**) 공공사업 BIM 의무화('11), (**싱가폴**) 민간 포함 5천㎡ 이상 BIM 의무화('15)

○ 주요 선진국 대비 **건설기술 수준은 70~80% 수준**이며, 민간 건설기업의 **R&D 투자 비중**도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Global Top 대비 주요 기술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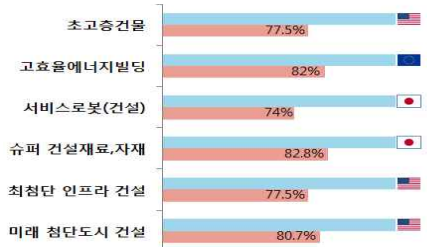

【 업종별 R&D 투자규모 비교(매출액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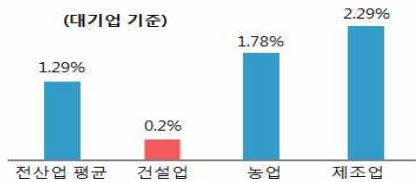

○ 그간 **R&D투자 위주 정책이 추진**되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과 실제 **현장 적용을 촉진하는 방안은 미흡**

□ **(개선방향) 기술개발 없이도 사업 수주가 가능**한 구조를 개선하고,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건설효율 및 품질 제고**

① **(핵심기술 적용 의무화)** 현재 일부 건축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BIM 등 핵심기술**에 대해 토목 및 건축 전분야에 **단계적 의무화**

② **(시범사업 실시)** 공공 발주청 건설현장을 **Test-bed**로 활용하여 **스마트 건설 신기술**을 **시범적용**하고 성과 확산

③ **(신기술 촉진)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정비용*** 경감, **IoT센서** 등 활용기술에 대해 **안전관리비 지급대상**에 포함

* (현행) 신기술 지정 전 시험시공 장소 개발자가 확보→ (개선) 공공기관 제공

④ **(창업 촉진)** 첨단 건설기술, 시험시설 등 **건기연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원센터' 구축하고, **유망분야 스타트업 적극 육성**('19)

과제 9. 안전 확보 및 신시장 창출

⑲ 스마트 인프라 발주 및 노후 인프라 개선

□ **(현황)** 단순 시공·도급 중심 **건설시장 확대는 한계**가 있어, 성장이 전망되는 **스마트 인프라,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시장** 진출 필요

○ 향후 건설수요의 한 축이 될 **스마트 시티**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16년 9천억불 수준에서 **'22년 2.1조달러 규모**로 성장 예상(IHS)

○ '60년대부터 집중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인프라 유지관리시장은 **연간 4.1조원에서 확대** 추세

* (30년 이상) ('16) 2,774개(10.3%) → ('26) 6,944개(25.8%) → ('36) 16,558개(61.5%)

- **미국**은 인프라 노후화 대응시기를 놓쳐 **관리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일본**은 2030년까지 '**노후화 사고 Zero**'를 목표로 설정

□ **(개선)** 국내 스마트시티를 **신기술 적용 Test-bed로 활용**하여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노후인프라 **유지관리 체계**를 선제적 구축

○ **(인프라규제 특례)** 건설과 IoT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 발주 촉진을 위한 건설 관련 **규제특례* 부여 검토**

* 건설+IT+SW업체 간 컨소시엄·SPC에 시공자격을 부여하는 등 건산법, 국가계약법, 정보통신·전기공사업 등의 규제를 일부 미적용하는 등 방안 마련

○ **(노후 인프라 개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강소기업을 위한 **안정적 시장 확보**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18.12.7)

- **시설물 안전점검**의 부실점검업체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내실화, 주요 **SOC의 내진 보강**도 차질없이 추진('21년 완료)

- **노후 인프라** 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물 점검 및 생활안전 SOC 투자를 집중 확대**하고 관련 산업 및 전문인력 육성

⑳ 친환경 건설 활성화 및 건설안전 확보

□ (**현황**) 자원 및 에너지 부족, 기후 변화 등 **환경적 위협**에 대한 대응과 **건설현장 안전 개선** 등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함

○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춰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도 가속화되고 있어 저탄소 시대에 적극 대응 필요

* 영국은 건설 vision 2025를 통해 온실가스 50% 절감을 목표로 제시

- 건설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건설자재의 지속가능성**도 모색

○ 건설 분야 **재해율**이 타 분야에 비해 **여전히 높아*** **건설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공사현장 등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건설업 재해율은 0.84%로 산업평균 대비 1.7배, 사망만인율 1.76%로 2배('16)

□ (**개선**) **건설재료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건축물 에너지 성능**도 **강화**하며, **건설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련 제도 이행력 제고 추진

○ (**친환경 건설재료**) **순환골재 활용, 미세먼지 저감 건설재료**를 개발*·활용하고, 적정한 **환경관리비 산출**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생화학 가소재를 통해 100% 재활용 가능한 iQ Natural 플라스틱 등 개발도 검토

○ (**Maintenance Free 건설재료**) **구조물 상태를 진단하고 스스로 치유가 가능한 건설재료**를 개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효율화

* 센서를 내장하여 상태를 진단하고, 박테리아·캡슐을 활용한 자기치유 가능 재료

○ (**에너지절감**) **제로에너지 건축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임대형 단독주택단지 등 **제로에너지 건축 사업 본격 추진**(동탄 등)

○ (**건설안전 강화**) 건설사업의 최상위 결정자인 발주자를 포함하여 **모든 건설주체**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이행력 제고

* (공통) 안전관리수준평가 실시, (발주자) 설계 안전성 검토,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적정 안전관리비 계상, (감리자) 부실감리 처벌 강화, (원청) 사고 유발 시 입찰 불이익

Ⅵ. 추진일정

목표	추진 과제	주요 조치내용	추진시기 18	19	20	21	22
산업 구조의 경쟁력 강화	① 건설업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	· 혁신위원회 구성 · 개편방안 확정, 건산법령 개정	■	■			
	② 원도급자 직접시공 활성화	· 직접시공 의무제 :건산법 시행령 · 시평 및 입찰 인센티브 부여		■	■		
	③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 등록기준 등 조정방안 확정 · 건산법령 개정			■	■	
	④ 기술력 중심 발주제도 개편	· 발주제도 개선 방안 마련 (기재부) · 관련 법령 개정		■	■	■	
	⑤ 중소 건설기업 성장경로 지원	· 컨설팅바우처 사업 신설 · 동반진출 우수 기업 지원	■	■	■	■	■
	⑥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 퇴출	· 고용보험 및 건축 착공정보 연계 · 현장배치기술자 배치기준 강화			■	■	
	⑦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 3진 아웃제: 건산법 개정 · 신고포상금제, 준법등급제 신설: 건산법		■	■	■	
공정한 동반성장 기반 마련	⑧ 건설근로자 임금보장 강화	· 발주자 임금직불 전면 시행 ·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및 도입	■	■	■	■	■
	⑨ 건설 근로환경 개선	· 퇴직공제 확대: 건고법 시행령 (고용부)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장: 건산법			■	■	
	⑩ 숙련 기술자 및 기능인력 육성	·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 교육제도 개편: 건진법				■	■

목표	추진 과제	주요 조치내용	추진시기				
			18	19	20	21	22
	⑪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 하도급입찰 정보공개 도입, 적정성심사 강화: 건산법					
	⑫ 우수 협력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 상호협력 평가 내실화, 하도급 평가대상 확대: 계약예규(기재부)					
	⑬ 공공 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	· 간접비 지급 개선방안 마련 · 적정 공사원가 산정방안 마련 (기재부 합동)					
	⑭ 대형 건설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	· 일방적 계약변경 시 과태료 신설: 건산법 · 시공능력평가 방식 개정: 건산법 시행규칙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⑮ 설계·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 기술용역 종심제 : 국계법 (기재부) · 시공책임형CM 제도화(기재부)					
	⑯ 지원체계 고도화로 진출시장 다변화	· 신남방·신북방 지원펀드 조성 · 해외건설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⑰ 핵심 건설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 핵심기술 신규R&D 등 예타, 사업					
	⑱ 민간 기술개발 및 품질 확보 촉진	· BIM 등 핵심 기술 적용 의무화 · 안전관리비 지급 대상: 건진법 · 청년 창업 지원 센터 구축					
	⑲ 스마트 인프라 및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 규제특례 : 법령 제·개정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법령 제정					
	⑳ 친환경 건설 활성화 및 건설안전 확보	· 환경관리비 제도개선 · 제로에너지 건축 사업 및 의무화					